

의안번호	제 823 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자	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1년 8월 25일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박형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23
----------	-----

발의연월일 : 2021년 8월 25일

발 의 자 : 박형용, 이숙애, 이상욱
이의영, 장선배, 허창원
황규철

1.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에 따른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가 제정·시행 중이지만, 교육 대상자인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교육시설·인력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촉진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 용어의 뜻 규정 (안 제2조)
- 나.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지정·운영, 위탁 관련 규정 (안 제7조, 제8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1-96호
- 다. 협의 :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 노인장애인과, 충청북도교육청
- 라.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제3호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교육하거나 운영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 간 균형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법 제11조에 따른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2.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과정·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간 연계·협조체제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강화 및 연구 활동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및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에게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교육청 및 시·군과 협의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운영을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문)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 6.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가 실시한다.

③ 그 밖에 교육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4. 23.>

-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 2. 평생교육 상담
-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③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평생교육법>에 따른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2. 비용 발생 요인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 지원 사업비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시행계획)
 -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
- 조례안 제6조(지원사업)
 -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 협조체제 구축, 종사자 역량강화, 연구 활동
- 조례안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
 - 도지사 설치· 지정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및 충청도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교육청 및 시· 군과 협의해 운영 비용 지원
- 조례안 제9조(자문)
 -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지급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관련 조문	지원대상	지원내용	산정기준
5조	1식(평생교육진흥원)	실태조사 경비	1식 8백만원
6조	①3개(시군 공모사업) ②1식(평생교육진흥원)	① 프로그램 운영 지원 ② 연구, 연수, 협력 활동 등 지원	① 1개 5백만원 ② 1식 15백만원
7조	교육청 등록 시설	시설 운영지원	1개 20,000천원
9조	자문 의뢰 전문가	자문료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규정

나. 추계 결과 : 연간 70,000천원(도비) 소요

기관별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비 지원현황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액 (천원)	세 부 내 용	비고
총계			825,000	기존 755,000 / 신규 70,000	
道	신규 합계		70,000		비용 추계액
	소계		280,000		
	프로그램 지원(6조)	3개 사군	15,000	평생교육 프로그램(공모) 5,000천원 × 3개 사군	신규(50%)
			10,000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신규(진흥원)
	교육운영비(6조)	*15개소	210,000	강사비, 임차료, 인건비, 차량 유지비, 학습 기자재, 사무용품 등	지원중(37%)
	연구 및 협력(6조)	1식	15,000	연구, 연수, 협력 활동 등 지원	신규(진흥원)
	실태조사(5조)	1식	8,000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신규(진흥원)
	시설운영비(7조)	1개소	20,000	시설 개·보수비, 인건비 등	신규
	심사수당(9조)		2,000	100천원 × 5명 × 4회(분기)	신규
시·군	소계		375,000		
	프로그램 지원(6조)	3개 사군	15,000	평생교육 프로그램(공모) 5,000천원 × 3개 사군	신규(50%)
	교육운영비(6조)	*15개소	360,000	강사비, 임차료, 차량 유지비 학습 기자재, 사무용품 등	지원중(63%)
교육청	시설운영비(7조)	**3개소	170,000	시설 개·보수비, 인건비 등	지원중('18~)

* ①장애인 교육비 지원사업 3개소[다사리 학교(청주), 장애인학교(제천), 해뜨는학교(옥천)], ②성인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운영 1개소(청주), ③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9개소(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영동, 증평, 진천, 괴산, 단양), ④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지원 2개소(청주, 충주)

** 다사리 학교(청주), 평생열린학교(충주), 해뜨는학교(옥천)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및 시·군비 ※ 교육청 별도 지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계
세 입	62,000	70,000	62,000	62,000	70,000	326,000
도 비	62,000	70,000	62,000	62,000	70,000	326,000
세 출	62,000	70,000	62,000	62,000	70,000	326,000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비 지원	62,000	70,000	62,000	62,000	70,000	326,000
재원조달	62,000	70,000	62,000	62,000	70,000	326,000
자체수입(지방세)	62,000	70,000	62,000	62,000	70,000	326,000
시·군비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 실태 조사 3년마다 실시로 1차년도, 3~4차년도 실태 조사 예산(8백만원) 감액